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모경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0.

발 의 자 : 모경중 · 이성윤 · 김교홍
서영교 · 권향엽 · 김 윤
강준현 · 박정현 · 이주희
이광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제도를 활성화하고, 주민의 직접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,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입안지원 체계를 마련하고, 현행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참여의 실질화를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주민조례 청구권자가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에 관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의2).

나.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연대 서명자의 수를 200분의 1에서 300분의 1 등으로 완화함(안 제5조).

다.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

하고, 위원회 심사 시 주민조례청구의 취지를 반드시 듣도록 함(안 제13조).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전단 중 “운영하여야 한다.”를 “운영하여야 하고, 그 기능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홍보하여야”를 “교육·홍보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·홍보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주민청구조례안 입안 지원) 청구권자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입안·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에 법률적·정책적·행정적 자문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여금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200분의 1”을 “300분의 1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150분의 1”을 “200분의 1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100분의 1”을 “150분의 1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70분의 1”을 “100분의 1”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50분의 1”을 “70분의 1”로 하고, 같은 항

제6호 중 “20분의 1”을 “30분의 1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단서 중 “1년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들을 수 있다”를 “들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영상을 통하여 그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조 및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민조례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)	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· <u>운영하여야 한다</u> 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운영하여야</u> <u>하고, 그 기능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</u> .----- ----- ----- -----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·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<u>홍보하여야 한다</u> . <후단 신설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육·홍보하여야</u> -----. <u>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·홍보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</u> .
<신 설>	제3조의2(주민청구조례안 입안 지원) 청구권자는 주민청구조

	<u>레안의 입안·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에 법률적·정책적·행정적 자문 또는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직원 또는 해당 주민청구조례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여금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.</u>
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.	제5조(주민조례청구 요건) ①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·도: 청구권자 총수의 <u>200분의 1</u>	1. ----- ----- ----- <u>300분의 1</u>
2.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: 청구권자 총수의 <u>150분의 1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0분의 1</u>
3.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<u>100분의 1</u>	3. ----- ----- ----- <u>150분의 1</u>

4.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
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
총수의 70분의 1

5.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
시·군 및 자치구: 청구권자
총수의 50분의 1

6. 인구 5만 미만의 시·군 및
자치구: 청구권자 총수의 20
분의 1

② · ③ (생략)

제13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지방의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(대표자와의 질의·답변을 포함한다)를 들을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4. -----

-----100분의 1

5. -----

-----70분의 1

6. _____
 _____ 30분
 의 1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) ① -----

② -----

-들어야 한다. 이 경우 대표자
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

③ · ④ (생 략)	<u>대리인을 참석하게 하거나 서 면 또는 영상을 통하여 그 청 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다.</u>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	---